

계룡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 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

의안 번호	78
----------	----

제안년월일 : 2003. 11. 10.

제안자 : 김정순 의원외 2 인

1. 제안이유

- 계룡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등의 허가과 절차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허가(안 제2조), 녹음등의 제한(안 제3조), 허가취소(안 제4조), 등을 정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계룡시의회의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등의 허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 등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구두에 의한 허가로 갈음 할 수 있다.

제3조 (녹음등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때
2.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3. 녹음등의 신청자가 회의장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4조 (허가의 취소)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녹음 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허가 신청서

계룡시 의회의장 귀하

(위원장)

계룡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본(위원회) 회의 상황을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자

소속(또는 주소) :

성 명 :

3. 목 적 :

4. 방 법 :

5. 기 구 :

6. 취재요원수: 명

 년 월 일

신청자(발행인 또는 신청인)

(인)

허 가 서

귀 하

귀하가 신청한 회의장(본회의·위원회)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니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기 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방 법 :

3. 기 구 :

4. 취재용 출입증 : 매

년 월 일

계룡시 의회의장 (인)

(위원장) (인)

※ 준 수 사 항

1.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시에는 항상 허가서를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2.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중이라도 의회(의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위원장)의 지시가 있으면 퇴장하여야 합니다.
5.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